

HIV/AIDS 환자의 재감염 예방 및 관리

새감염이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 치료하는 중이거나, 치료한 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지 않던 질환이 입원기간 중이나 퇴원 후에도 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글 이인규 감염인 활동가

재감염의 정의

재감염이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에 또 다시 다른 질환의 징후와 결과를 동반한 질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의료시설(병원)이나 일상생활 중에서 생기는 요로감염, 수술 후 감염, 호흡기 감염, 음식물로 인해 전파되는 질환 감염, 상병, AIDS 등이 포함된다.

재감염이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을 치료하는 중이거나 치료한 후,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지 않던 질환이 입원기간 중이나 퇴원 후에도 그 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재감염의 원인

재감염의 원인은 많은 환자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치료를 받는 병원 환경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위생상태의 불량으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한다. 또한 질환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성 호흡기 질환을 비롯하여 상병 등이 전파되기도 한다.

재감염에 취약한 대상자

- 신생아, 조산아, 노인, 수술환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 장기 입원환자
- 특정한 종류의 약을 투여 받는 환자(항암제, 항생제, 만성질환 치료제복용자 등)
- 에이즈나 그 외 질환으로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
- 그 외 의료진이나 종사자 등

HIV/AIDS 감염인의 재감염 전파의 경로 및 종류

후천적으로 면역결핍이 진단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HIV/AIDS 환자 등이 재감염에 노출되는 데에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열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만, 더

러는 본인의 생활 습관상의 부주의 때문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중에서 감염인들에게 가장 큰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재감염은 성접촉으로 인한 제 2차 3차 감염이다. 즉 성인성질환을 지닌 상대방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면서 상병에 감염되거나, 다른 형질의 HIV에 재차 감염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감염 및 새로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인 자신의 체계적이고 성실한 건강관리와 책임 있는 행동일 것이다.

많은 감염인들이 감염사실 인지 후에도 성생활을 지속하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감염인도 성적 권리가 있으며, 육체적으로도 성생활을 지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자신과 상대방을 위하는 안전한 성의 실천을 통해 재전파에 주의하는 건강한 성생활의 습관화가 필요할 뿐이다.

재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 상대방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가?

둘째 - 본인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인가?

현재 감염인 중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러한 성 문제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며 또한 상대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성문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염인의 성생활은 비감염인의 성생활보다 더욱더 계획적이고 준비되어야만 한다. 상대방에게 전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못지 않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콘돔은 늘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콘돔 없는 성관계는 삼가야 한다. 잘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은 본인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안전한 성의 실천에 콘돔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콘돔으로도 100% 예방이 어려운 성인성



질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역력이 약한 감염인은 성접촉으로 쉽게 STI(매독, 임질, 콘딜로마 등의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제 정부와 민간단체는 감염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재감염 예방에 대한 지식과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과 그에 따른 세부 실천사항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제공해야 한다. 감염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을 생활화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 및 행동을 조절하는 성찰적인 자세를 갖춘다면 본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에이즈 예방 효과로 귀결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긍정적인 감염인에 대한 인식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제시되어 있는 감염인의 성생활에 있어서의 본인의 의무와 벌칙 규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감염인의 의무

1. 에이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재감염, 발병 및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며, 법에 의해 행

하지는 제반조치에 협력해야 한다.(법3조2항)

2. 감염경로와 성 접촉에 관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법10조)

3.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행위 즉 헌혈이나 헌혈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법19조)

4.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다.(시행령 10조 1항) 그러나 에이즈는 성병이 아니라 법정 제3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5. 거주지 이전 시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5조3항)

벌칙 규정

제19조(전파배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다음 각 호의 전파배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행하는 성행위

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